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1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김상훈 · 이현승 · 권영진
고동진 · 이달희 · 박충권
강대식 · 김재섭 · 이만희
안철수 · 최보운 · 김선교
유용원 · 김장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안 제7조 제1항제8호 신설 및 안 제23조 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시 혁신성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1. 제1항제1호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2. 제1항제2호의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타적 운영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배타적 운영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u>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u>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이하 “배타적 운영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u><신설></u>	제23조(배타적 운영권)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1. <u>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시 혁신성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은 <u>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③ · ④ (생략)	<u>원회가 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u>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u> -----. 1. 제1항제1호의 경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2. 제1항제2호의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 ③ · ④ (현행과 같음)
--	---